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황규영*

〈요 약〉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법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키고 세법규정의 내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기부금과 달리 기부행위가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한 과세연도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월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자율성과 기부 의지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한도, 이월공제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wanggy@kookmin.ac.kr

논문접수일 2020년 3월 30일

1차수정일 2020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13일

I. 서 론

기부금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된다. 국가가 조세수입을 소외 계층 지원예산으로 할당하여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한다면, 기부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을 활성화하고자 적격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손금산입 등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기부금 중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 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는 종업원지주제의 확대에 해당하여 노사 간에 화합 및 협력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격기부금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그런데, 현행 세법은 개인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형평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 규정은 그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선행하여 손금한도를 구하게 되어 있는 법정기부금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서 선행 세무조정항목인 법정기부금과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보다 후순위로 세무조정이 되는 항목인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무조정 결과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의 흐름을 따라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취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금 세무조정의 흐름에 입각하여 현행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노력은 기부금에 대하여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세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의 유형(법인과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와 기부금 관련 세법규정

1. 선행연구

기부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성·문성훈(2015)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세제적인 측면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기부금의 조세혜택을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채병완·임승규(2017)의 연구와 송은주(2015)의 연구가 있다. 송은주는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측정하여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와 기부규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의 조세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기부금의 유의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하였다. 전병욱·기은선(2018)의 연구는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이 소득의 변화에 대하여 하방경직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종교를 가진 가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문진주·홍기용(2016)의 연구에서는 기부에 미치는 비조세적 영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사회심리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김현아·황문호(2019)의 연구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기업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동료기업이 있을수록 기부금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박기백(2010)은 소득, 조세감면 혜택, 학력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정재연(2014)은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박태규(2013)는 기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거나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이고 정책적인 분석은 기부금과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연결 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입안하거나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반면에 본 연구는 세법규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법인과 개인 간에 기부금이 미치는 조세효과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 간 조세평등을 확보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높여서 법적 안정성과 일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과세규정 등의 개정 연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관련된 현행 세법규정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규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입법되고 개정되어 왔는 지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의 개정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의 신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으로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제1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그 취지는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소액주주의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출자, 우리사주로 받게 되는 배당, 우리사주의 임가취득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동법 동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설된 제12항의 기부금 혜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대주주가 출연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된 상태였다.

한편, 신설된 제12항 본문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부의 내용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가 세무조정이 선행되는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위 조문 상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말함)과 특례기부금(위 조문 상의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말함)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금액의 30%로 한다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반부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²⁾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당해 과

1)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proxy.kookmin.ac.kr:8010/tax/>)’ 조문해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참조.

2) 전반부 규정의 말미에 나타나는 “...하거나,”라는 표현에 주목할 것.

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택적 적용을 암시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시에 존재했었던 것인데, 누구도 당시에 이를 법인이 지출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³⁾ 전반부의 규정과 후반부의 규정이 개인이 지출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 전반부 규정을 따라서 손금한도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후반부를 따를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별지서식 중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전반부의 규정에 근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결되었다.⁴⁾

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의 개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2010.1.1. 개정 시에는 제12항에 있던 것을 제13항으로 이관하였고, 2010.12.27. 개정 시에는 폐지되는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말함)을 반영하여 제13항의 내용을 이에 맞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2014년 말 세법개정 시에 소득세의 기부금 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된다.

종 전	개 정(2014.12.23.)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u>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u>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u>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u>

- 3)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당시 법인들이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그 손금한도를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본 항목의 신설이유에서도 ‘대주주’의 출연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란에 규정됨.

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데, 위 개정내용 대비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기부금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의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제13항의 후반부가 적용되는 대상자를 ‘법인’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기부금 항목이 신설되던 2003년 말에는 제13항(2003년 당시에는 제12항) 후반부의 적용대상으로 법인을 고려하지 않았음은 앞서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2014.12.23. 개정에서 제13항 후반부의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분명히 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적격기부금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과 연동하여 종류별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어야 하며, 당시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포함하여 종류별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규정하고 있었던 소득세법의 내용이 수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작업, 즉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와 세무조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4조의 내용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포함하여 개정한다든지 또는 기부금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신고서식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개정작업은 2019년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따라서 법인이 지출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는 명문화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다가 2020.3.13. 세법개정 시에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에 이른다.

한편, 이 서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지출합계-이월결손금)의 3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한도와 상이한 상태이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같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른 손금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 안에서도 다른 적격기부금의 세무조정과 연계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 2019.3.20.에 개정된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나 세무조정과 관련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III. 현행규정의 문제점

현행 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무조정 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법인이 그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더욱 불거진다. 앞서 관련된 세법규정의 개정 연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산입 혜택은 실무적으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2014.12.23. 개정을 통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손금산입의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명시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상 보완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5년이 경과 하였고, 뒤늦게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보완된 내용도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논리로 되어 있어서 세법 간의 논리적 일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자체적으로도 다른 적격기부금(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손금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미비점들이 발견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과 개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적격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그 손금한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아마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이고 한시적인 혜택으로 보아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기부금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인 듯하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때에 그 손금한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위 규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 기부금조정명세서)에 2020.3.13.자로 포함되어 있다. 관련된 기부금조정명세서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②]	
②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times 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 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①-②) \times 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⑬-⑮)>0, ⑬]	
⑭ 한도액 $(⑧ \times 10\%, 20\%)$		⑯ 한도초과액[(⑬-⑮)>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②)			

위 서식의 ①번 항목인 ‘소득금액계’는 ‘차가감소득금액’에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합산한 것이다.⁶⁾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는 ⑩번 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는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 지출합계-이월결손금)의 30%」가 된다.

한편, 개인이 지출한 적격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 :

6)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성방법’ 1번의 내용을 참조할 것

기부금조정명세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text{MIN}[(4), 26]$	
②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text{MIN}[(4-5)>0, 3]$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3-6)>0]$	
④ 한도액 $[(1-2)>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1-2-5-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8-11)>0]$	
⑩ 한도액 $(8 \times 30\%)$		⑬ 한도초과액 $[(9-10)>0]$	
⑪ 필요경비 산입액 $\text{MIN}(9, 10)$			
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⑮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text{MIN}(17, 23)$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⑯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text{MIN}[(17-18)>0, 16]$	
⑯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14+15)$		⑰ 한도초과액 $[(16-19)>0]$	
⑰ 지정기부금 한도액(㉠ 또는 ㉡)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12 \times 10\%) + (12 \times 20\% \text{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12 \times 30\%)$			

개인이 지출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는 <표 2>의 ⑩에 제시되어 있다. 즉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액)의 30%」가 된다. 법인세법상 ‘차감소

득금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차이 등은 논외로 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는 선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 결과를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보다 먼저 세무조정을 하는 법정기부금의 세무조정 결과가 후순위 기부금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반영되어 있다(법정기부금의 필요 경비 산입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 기부금 중 손금인정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이 지출한 경우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간에 조세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조세부담의 차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초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⁷⁾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기부자가 된 경우에는 법인이 기부자가 된 경우보다 차별적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법률로써 침해를 받는 사익의 균형성 확보라는 비례성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의 출연을 장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함으로써 노사 간의 화합을 증진 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볼 때 현행 세법규정은 개인(대주주)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서 입법취지에 비추본 법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 상태가 된다.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통일성은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⁸⁾ 또한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정합성(Kohärenz)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가치인 '공익'이 인정받기 위한 형식요소의 핵심을 이룬다고 일컬어진다.⁹⁾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현재의 세법규정은 개인 대주주의 출연을 장려한다는 입법취지의 입장에서 볼 때

7)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비례성의 원칙이라 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합성 ③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의 최소성 ④ 입법으로 침해를 받는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8) 독일의 헌법학자 Isensee는 “공익은 국가적 (국민)생활의 동화통합과정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기대)목표이다. 공익이라는 기호 속에서 (기대)목표의 통일성·법정당성·통일성으로서의 국가라는 결사체는 인식되고 설명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공익의 속성으로서 「통일성」을 거론하였다(Isensee, J.,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ders./Paul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II, 1988, S.57). —은승표(2012),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p.275에서 재인용—

9) 법률의 공익성이 인정받기 위한 형식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이 거론되는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법률 상호 간에 최소한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시스템 상호 간에 상용성(Kompatibilität)과 보완성(Ergänzung)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통일성은 개념적으로 내적 합리성을 갖는 것에 더하여 구성적으로도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되며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그 법률이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은승표(2012) p.286 참조).

개념적인 내적 정합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간의 구성적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2. 기부금 세무조정의 내적 정합성의 문제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 즉 법인과 개인 간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관한 손금한도가 상이하게 규정됨으로 인해서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의 차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의 차이에서 찾는다. 소득세법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을 소득금액의 50%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가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소득세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출액만으로도 소득금액 전부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기부금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한도는 법정기부금을 반영한 후에 남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세에서는 법정기부금이 소득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되므로 법정기부금의 크기를 반영하기 전 소득금액의 30%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로 하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인정분의 합계액은 소득금액의 80%를 넘지 않게 되고 결국 기부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법정기부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인세법 자체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논리를 따르다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도 법정기부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표 1>의 ⑭가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를 나타내는 항목인데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는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지출합계-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로 되어 있다. 즉, 법정기부금 중 손금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세법 내부의 논리구조가 아님을 알게 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할 경우에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의 한도를 정하는 기부금의 속성이 반영된 전통적인 논리의 흔적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법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세무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내적 합리성이 존재했었고 이를 따라서 여러 종류의 적격기부금이 있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을 따랐었다. 기부금 세무조정에 적용되던 이러한

논리의 내적 정합성은 과거 특례기부금(2010.12.27. 세법개정으로 폐지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지칭)이 존재하였던 시기에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의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살펴보면 손금한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기부금들(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었고 각각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는 선순위 기부금의 손금 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후순위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¹⁰⁾

이렇게 선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후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을 행하는 논리는 기부금의 손금한도라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기부금은 유일하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의 한도를 계산하는 항목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다른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며(기부금 세무조정에 사용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정의 흐름도 복잡하게 전개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득금액은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산출된다. 하지만 기부금의 세무조정을 위해서 ‘소득금액’이라는 기준금액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므로 세법은 차선의 소득금액 개념을 도입하였다.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은 완료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행하기 전의 소득금액이 그것이며 세법은 이를 ‘차가감소득금액’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차가감소득금액을 그대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는 기준금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세법의 체계상 차가감소득금액에는 이미 기부금 지출액이 손비로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손비처리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성방법 1’에서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 계’를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러한 기부금 세무조정의 내적 정합성은 특례기부금이 존재하던 때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선명하게 드러난 상태로 규정되어 있다가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남게 되면서 희미해진 상태가 되었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적격기부금으로 추가될 때에 그 내적 정합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그 정합성이 깨진 상태이다.

결국 현재의 법인세법은 유독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만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손금한도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었고 기부금 세무조정에 내재된 법적 정합성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었다.

저자가 현재의 규정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규정을 따를 경우 나타나는 개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단절현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10) 2008.3.31.에 개정되어 적용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기부금 조정명세서)의 ⑩번 항목(특례기부금의 한도액)과 ⑪번 항목(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의 내용을 참조할 것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있다. 반면에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는 과거의 세무조정 흐름(기부금 세무조정에 적용되었던 내적 정합성)을 따라서 1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따르도록 규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순위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만 세무조정 흐름에서 단절된 상태가 되어서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가 오로지 법정기부금의 크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색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색함은 아마도 법인세법에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적격기부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2014.12.23. 개정 시에 법인도 그 대상이 됨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법인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종류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기존 기부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판단이 간과되었을 수 있다.

3. 이월공제 불인정의 문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추가적인 측면이 있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과는 달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부금 지출의 비정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는 매 과세연도마다 소득의 일정비율 만큼씩만 지출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비정규적인 지출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부자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세법이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세법은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부와 관련된 자율성과 참여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유독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 입법 취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더 이례적이고 비정규성을 갖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비정규성을 갖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기부와는 달리 한 번의 기부행위 시에 누적적인 금액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손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이월공제 배제를 그 기부행위에 대한 공익성을 덜 인정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기부금의 공익성 인정 차이는 손금한도의 차이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지정기부금의 그것보다 더 많이 인정하는 이유는 법정기부금의 공익성이 지정기부금의 공익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익성은 지정기부금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타당한데 이월공제는 지정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행위의 비정규성을 감안하면 해당 기부행위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 기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월공제의 혜택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더 요긴하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의 배제사유를 조세특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인정 규정이 조세특례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이월공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존재하였던 특례기부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논리가 특례기부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했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조세특례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¹¹⁾

IV. 개선방안

이제까지 살펴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의 개선

앞서 ‘기부금 세무조정의 내적 정합성의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자신의 손금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확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여러 종류의 적격기부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후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11)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이월공제 허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기부는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하도록 모법인 정치자금법(제11조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법도 모법의 취지를 승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법은 정치자금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까지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모법인 정치자금법의 범위 내에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다시 말해서 세무조정 당시에 획득가능한 가장 정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순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되면 그 기부금 중 얼마의 금액이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지가 결정된 상태가 된다. 후순위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소득금액의 크기를 수정하여야 하는 요인이 생긴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금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은 ‘다른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난 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순위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는 기준소득금액은 선순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규정된 것이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조정명세서이며, 법인세법상 기부금조정명세서도 특례기부금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논리의 흐름에 합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¹²⁾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적격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기부금의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기부금 세무조정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정은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내적 정합성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과 무관하게 구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의 내용을 개정하여 선순위 기부금의 세무조정 결과 확정된 손금인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보다 후순위로 세무조정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손금인정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개선안

항목	현 행	개선안
⑩ 한도액	$(①-②) \times 30\%$	$⑧ \times 30\%$
⑭ 한도액	$(⑧ \times 10\%, 20\%)$	$[(⑧-⑪) \times 10\%, 20\%]$

더불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의 내용도 개정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켜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12) 2008.3.31. 개정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의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u>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u>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u>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u>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인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익성의 측면이나 조세특례라는 측면에서는 찾기 어렵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와 우리사주조합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그것이 필요한가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월공제의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비정규적으로 지출되는 많은 금액의 기부금에 대하여도 그 공제시기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보장하고 기부행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기부 의지를 증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보다는 비정규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다른 기부금보다 특정 과세연도의 손금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 이월공제의 필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취지는 그 손금한도의 크기와 우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익성은 지정기부금의 그것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세법이 부여하는 기부금

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월공제의 혜택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정해놓은 조세특례의 크기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는 손금한도의 크기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설(却說)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여 해당 조합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종업원지주제가 확대되도록 장려한다는 법적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라도 다른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손금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이월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V.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규정의 변화와 현행 세법의 내용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은 2014년도까지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개정으로 법인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손비로 인정받게 됨이 명확해졌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기부금조정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동일한 기부금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간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를 경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 세무조정 항목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행 세법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만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지출의 성격이 강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기부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크기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바꾸고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 시 적용할 소득금액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크기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

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부금 상호 간 세무조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정과 더불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혜택이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차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조세효과와 중대하게 연결된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등의 출연활동이 조세효과를 논하기에는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은 다양한 납세자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 세법 간의 형평성의 문제나 특정 항목에 내재된 논리적 흠결의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알기 쉬운 세제로의 개선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세법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과세논리의 정합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수행 하였지만 그 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 김수성 · 문성훈. 20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63-93.
- 김현아 · 황문호. 2019. “명성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동료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161-189.
- 문진주 · 홍기용. 2016.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99-220.
- 박기백. 2010.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143-158.
- 박태규. 2013.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National Assembly Library* 제50권 제5호 : 22-27.
- 송은주. 2015.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 167-198.
- 은승표. 2012.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1호 : 273-314.
- 전병욱 · 기은선. 2018.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적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5권 제3호 : 157-197.
- 정재연. 201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 321-346.
- 채병완 · 임승규. 201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3호 : 331-352.
- 삼일아이 홈페이지(<http://www.samili.com>)
- Sensee, J. 1988.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ders./Paul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II, S.57

Improvement of the Donation Exclusion Rule about the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Gyuyoung Hwang^{*}

〈Abstract〉

The donation exclusion rule about the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ESA) was designed as part of tax preference in order to promote major shareholder's donation to ESA and solidify the financial structure of ESA.

This research reviewed the tax revision history about the donation to ESA.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weakness of the current tax provision about the donation to ESA and sought the improvement plan about i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corporate tax provision about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is different from the individual tax. Besides this inequity,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regulation lacks internal consistency. In other words,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stated in the corporate tax is established without consider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donations(the regal donation and the designated donation).

Therefore to remedy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equity and coherenc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with the same contents of the individual tax.

In addition to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carryover deduction benefit to the donation limit exceeded in ESA. In general, the donation to ESA get done more irregularly. Therefore in case of the donation to ESA, the limit excess is more likely to occur than the designated donation. Meanwhile the current tax regulation do not permit the donation to ESA to deduct carried forward. Consequently the current provision may restrict the autonomy and volition of donation to ESA. The proposal allowing the carryover deduction can resolve these shortcomings.

〈Key words〉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donation, exclusion limit, carryover deduction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wanggy@kookmin.ac.kr